

-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2018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2018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는 연수구 치매안심돌봄터 외 1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인사복무, 예산회계, 주요 추진사업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총 15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8건, 주의 7건), 재정상 조치 1,667,960원(회수 897,900원, 추징 522,060원, 추급 248,0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8년 감사업무 종합 계획 [감사실-8032 (2017. 12. 28.)]

2 감사대상시설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대상

감사 대상	감사 일정	감사 범위	관련부서	비고
연수구 치매안심돌봄터	2018. 11. 12. ~ 11. 16. (5일간)	2015. 1. 1. ~ 2018. 9. 30.	보건소 건강증진과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2018. 11. 19. ~ 11. 23. (5일간)	2015. 1. 1. ~ 2018. 9. 30.	보건소 건강증진과	

II 중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시설운영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전반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자체 운영규정 및 노인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인사 및 복무	종사자의 상근 여부 및 근무상황부 관리 직원 채용, 호봉책정, 급여,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리여부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여부
예산회계 (후원금 포함)	시설예산편성 절차 및 심의사항 예산과목 편성 적정 및 회계장부 비치, 증빙서류 적정 수입금 수납처리 적정 여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 공사 및 물품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
주요사업	치매안심돌봄터 : 인지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사업, 건강관리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 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사업, 상담 및 등록관리,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II 감사대상시설 주요현황

I 시설현황

□ 일반현황

○ 연수구 치매안심돌봄터 (단위 : 명)

소재지	직원현황					
	계	비상근 센터장	팀장	간호사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15 (선학동)	11	1	1	1	1	7
- 수탁법인 : 인천광역시 의료원 - 수탁기간 :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 - 시설현황 : 437m ² (132평) 생활실(2), 프로그램실(1), 수면실(2), 탈의실(1), 조리실(1), 창고(1), 세탁실(1), 샤워실(1), 사무실(1)						

이용자 현황											
성별			연령별				등급별			수급여부	
여	남		60대	70대	80대	90대	4등급	5등급	등급외	수급 (기초)	비수급 (의보) 공자
17	7	1	7	14	2	8	14	2	1	19	4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단위 : 명)

소재지	직원현황					
	계	비상근 센터장	팀장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작업치료사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 (선학동)	10	1	1	6	1	1
- 수탁법인 : 인천광역시 의료원 - 수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시설현황 : 395m ² (119평) 사무실(1), 프로그램실(1), 교육실(1), 검진실(1), 상담실(2), 카페(1), 사랑방(1),						

□ 관련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연수구 치매안심돌봄터	1,945,500	445,500	476,000	505,000	519,000	인건비, 운영비, 입소자상담치료비 (시/구비)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1,888,000	430,000	444,000	475,000	539,00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국/시/구비)

□ 주요사업

○ 연수구 치매안심돌봄터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횟수	유무료	이용금액 (원)	대상인원 (명)
인지재활 프로그램	음악치료	연수구치매안심돌봄터 어르신	2018.1.1~2018.9.30	주2회	무료	0	24
	서예			주1회	무료	0	12
	원예요법			주1회	무료	0	24
	생활체조			주4회	무료	0	24
	노래교실			주1회	무료	0	24
	종이접기			주2회	무료	0	24
	캘리그래피			주1회	무료	0	12
	기공체조			주2회	무료	0	24
	웃음치료			주2회	무료	0	24
	한지공예			주1회	무료	0	12
	미술치료			주2회	무료	0	24
	문화공연			월1회	무료	0	24
	표현놀이			주1회	무료	0	12
가족모임 및 교육	월별 가족모임 및 교육	연수구치매안심돌봄터 보호자		월1회	무료	0	10~20명 내외
가족자조모임	소리모음	자조모임 참여자		월2회	무료	0	10명 미만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유무료	이용금액 (원)	대상인원 (명)
인지건강증진	찾아가는 뇌건강프로그램	인지저하	2015. 02.- 2018.09.	주1회	무료	0	기관별 15명 내외
인지건강증진	푸르뇌 컴퓨터	치매	2018.1 ~ 현재	주5회 / 13:30-16:30	무료	무료	56명
인지건강증진	뇌美人	정상	2018.1 ~ 현재	주4회 / 13:30-15:30	무료	무료	75명
인지건강증진	뇌깨우氣	인지저하	2018.1 ~ 현재	주4회 / 13:30-15:30	무료	무료	47명

2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

시설명	최근 수감년도	지적사항 총괄	완결/미결 (진행)	미결사항	미결사유 및 진행사항
연수구 치매안심돌봄터	신설	-	-	-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신설	-	-	-	-

III 감사 결과

1 총 평

▶ 2018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는 연수구 ○○○○○○○○와 연수구 ◇◇◇◇◇◇에 대하여 시설운영, 인사복무, 예산회계, 주요 추진사업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 15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8건, 주의 7건), 재정상 조치 1,667,960원(회수 897,900원, 추징 522,060원, 추급 248,0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 ▶ 연수구 ○○○○○○○○와 연수구 ◇◇◇◇◇◇ 두 기관 모두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운영 전반에 있어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이용료 수입 세입예산 미편성,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계약에 관한 사항, 강사료 사업소득세 미징수 등 예산회계 분야에 미비한 부분이 다수 있었음.
- ▶ 연수구 ○○○○○○○○는 인사복무 분야와 시설운영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예산회계 분야는 아직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해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부서의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
- ▶ 연수구 ◇◇◇◇◇◇는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년 11월부터 연수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 업무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가능한 부분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처분을 요구함.
-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바람.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 현황별

구 분	처분 현황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원) 회수·환급	신분상 조치(건)
		시정	주의	개선		
계	15	8	7	0	총계 : 1,667,960원 회수 : 897,900원 추징 : 522,060원 추급 : 248,000원	
연수구 ○○○○○○○	7	2	5		회수 : 144,960원 추징 : 430,980원	
연수구 ◇◇◇◇◇◇	6	4	2		회수 : 752,940원 추징 : 91,080원 추급 : 248,000원	
건강증진과	2	2	-		-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인사복무	시설운영	예산회계	주요사업
계	15	1	1	13	0
연 수 구 ○ ○ ○ ○ ○ ○ ○ ○	7	1	1	5	-
연 수 구 ◇ ◇ ◇ ◇ ◇ ◇ ◇ ◇	6	-	-	6	-
건 강 증 진 과	2	-	-	2	-

3 처분요구 목록

□ 연수구 ○○○○○○○○

연도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7건(시정 2건, 주의 5건) / 재정상 575,940원 (회수 144,960원 / 추정 430,980원)				-
1	인사복무 (1건)	직원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심의 미실시, 임의서식 사용	주의	-	-	
2	시설운영 (1건)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 위·해촉 관리 소홀, 보건소 미승인	주의	-	-	
3	예산회계 (5건)	입소자 이용료 수입 세입편성에 관한 사항 ☞ 입소자 이용료 수입 세입예산 미편성 ☞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누락	주의	-	-	
4		세출예산 집행과목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과목 편성 부적정	주의	-	-	
5		용역 및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미이행 ☞ 계약 및 지출 구비서류 미첨부	주의	-	-	
6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 강사료 사업소득세 미징수	시정	추정 430,980원	-	
7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환급분 조치에 관한 사항 ☞ 보험금 등 환급금 미반환	시정	회수 144,960원	-	

□ 연수구 ◇◇◇◇◇◇◇◇

연도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6건(시정 4건, 주의 2건) 재정상 1,092,020원 (회수 752,940원 / 추정 91,080원 / 추급 248,000원)				-
1	예산회계 (6건)	세출예산 집행과목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과목 편성 부적정	주의	-	-	
2		직원 급여 지급 기본급 적용에 관한 사항 ☞ 기본급 기준 미적용, 직원 급여 과소지급	시정	추급 248,000원	-	
3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지출 구비서류 미첨부	주의	-	-	
4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 강사료 사업소득세 미징수	시정	추정 91,080원	-	
5		보험료 환급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보험금 환급금 미반환	시정	회수 702,940원	-	
6		기관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집행한도액 초과	시정	회수 50,000원	-	

□ 건강증진과

연도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2건 (시정 2건)				-
1	예산회계 (2건)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환급분 조치에 관한 사항 ☞ 보험금 등 환급금 미반환	시정	-	-	세입 조치
2		보험료 환급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보험금 환급금 미반환	시정	-	-	세입 조치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인사·복무 분야

1. 직원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운영규정(2017.8.14.)」 3. 복무관리 제2장 근무시간 제12조(근무평가)의 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평가 시행할 수 있다.
- 「○○○○○○○○○ 운영규정(2017.8.14.)」 4. 인사관리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심의사항) 3.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구 ○○○○○○○○○에서는 연2회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미실시하였으며 2018년도 근무평정표는 임의서식을 사용하는 등 직원 근무 평가에 관하여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시설운영 분야

1.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4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 제2장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르면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 사업 안내 지침」 9.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는 운영위원회는 돌봄터장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구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연수구 ○○○○○○○○○에서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해촉하여 관리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연수구 ○○○○○○○○○에서는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내부결재 등을 받아 관리하지 않았고, 또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 보건소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예산·회계 분야

1. 입소자 이용료 수입 세입편성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또는 수개년 분의 실적을 검토한 후 익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고려하여 추정하되, 과거 실적과는 상관없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시설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 사업 안내」의 “시설회계 운영 예산과목 구분”에 의하면 “세입과목”으로 “관 : 입소자부담금수입, 향 : 입소비용수입, 목 : 입소비용수입, 내역 : 센터 이용료(중식 및 간식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구 ○○○○○○○○에서는 입소자 이용료 수입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누락 한 사실이 있다.

2. 세출예산 집행과목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에 따르면 회의비는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제공 등을 포함한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에 해당하며, 연료비는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그러나, 연수구 ○○○○○○○○에서는 재료구입비를 회의비에서, 복사기 렌탈료를 공공요금에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연료비에서 지출 하였고, 연수구 ◇◇◇◇◇◇◇◇에서는 복합기 사용료를 공공요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3. 직원 급여 지급 기본급 적용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248,000원 추급

- 「2017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인원과 기간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어야 하고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인건비의 기본급 기준은 “[붙임1] 2017년 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 따른다.
- 그러나, 연수구 ◇◇◇◇◇◇◇◇에서는 직원 급여 지급에 따른 기본급 적용에 있어서 “2017년 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기준”을 미적용함으로써 급여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용역 및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금액(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규정(제4장 계약분야)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서, 계약조건,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또는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입인지(1천만원 이상 계약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시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계약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지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수구 ○○○○○○○○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식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급식비용을 지출하였고, 2018년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현수구 ○○○○○○○○와 현수구 ◇◇◇◇◇◇에서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필요한 계약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물품 및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확인해야 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5.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 현수구 ○○○○○○○○, 현수구 ◇◇◇◇◇◇ 】

▶ 처분요구 : 현수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430,980원 추정)

현수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91,080원 추정)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및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129조(원천징수 세율)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강의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경우의 강사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현수구 ○○○○○○○○와 현수구 ◇◇◇◇◇◇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있어 강의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강사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3.3%)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환급분 조치에 관한 사항

【 현수구 ○○○○○○○○, 현수구 ◇◇◇◇◇◇, ■■■■■■ 】

▶ **처분요구 : 연수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144,960원 회수)**

연수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702,940원 회수)

■■■■■■ (행정상 시정 : 세입조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예산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은 구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실적보고)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2017.9.25.개정)」에 의거하여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하고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및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구 ○○○○○○○○에서는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2017년도

지출분인 보험금 및 건강보험료 등 환급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반환조치하여야 함에도 2018년도 9월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연수구 ◇◇◇◇◇◇에서는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2017년도 지출분인 보험금 환급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반환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2018.1월분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시 급여가 2018.2.9.일자로 지급되었으므로 급여지급년월일을 2018. 2월로 신고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오기함으로서 가산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연수구 ■■■■■■에서는 수탁기관인 ○○○○○○○○와 ◇◇◇◇◇◇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2017년도 보조금으로 지출된 보험금 및 건강보험료 등 환급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반환조치하도록 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기관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연수구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50,000원 회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의 예산비목별 세무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기관운영비로 축하 화분 구입 시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